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
장애인 차별없는 전라북도 !!

2023. 4.

420장애인차별철폐 전북공동투쟁단

참여단체 (2023년 4월기준, 총 17개 단체)
고창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세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늘사랑,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부모연대, 전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전주시지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공공노조평등지부, 민변전북지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전라북도 2023년 장애인 권리예산및 권리정책 요구안

(5대 주제 22개 요구안)

구분	세부 요구안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 특별교통수단 분야 1. 특별교통수단 1대당 일 운행율 75%(하루 18시간)운행 운전원 인건비 확보 2. 임차 · 바우처 택시 도입확대및 발달장애인 이용 차별 철폐 3. 장애인 단체이동지원을 위한 '전북장애인버스' 5대 확보 4. 2024년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 시행계획 수립 5. 특별교통수단 주말대여제 폐지
	■ 버스 분야 6. 2024년까지 군단위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 계획 수립 7. 202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불가노선 개선계획 수립 및 저상버스 도입불가 노선심의기구 설치
	■ 보행환경 분야 8. 제4차 이동편의증진계획(or 보행환경계획)에 전라북도 보행환경 베리어프리 100% 계획 수립
2.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9.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200명 확대(시간제유형) 10.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전담인력 20명 지원 11.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조례 제정
3.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12. 전라북도 탈시설지원조례 제정(UN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 13. 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이행 계획수립 14.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지원 15.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15-1)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확대 (장애정도 및 필요도에 따라 120시간까지 확대) 15-2) 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200시간으로 확대 16. 탈시설정착금 인상 및 확대(1000만원→1500만원)
4.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17. 전북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명시) 18.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확대 18-1) 전라북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① '23년 31명 → ' 24년 100명 ② 연차별 인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계획 수립 18-2) 지자체 추가지원 확대 및 개편 ① 발달장애인 120시간 추가지원 19. 전라북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확대(전남 수준) 20. 탈시설 장애인 긴급주거지원 대상 선정 및 주거지원 21.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1-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신청자 예산 확보 21-2)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구분	세부 요구안
5. 장애인 건강권 보장	22.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22-1)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장애인 의료지원체계 수립 22-2) 전라북도 전 의료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진행 22-3) 전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 추가 설치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세부 요구안

(특별교통수단 분야)

1. 특별교통수단 1대 당 일운행율 75%(하루 18시간) 운행 운전원 인건비 확보
2. 임차·바우처 택시 전면도입및 발달장애인 이용 차별 철폐
3.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전북장애인버스' 5대 확보
4. 2025년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 계획수립
5. 특별교통수단 주말대여제 폐지

(버스 분야)

6. 2024년까지 군단위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
7. 202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개선 계획 수립

(보행환경 분야)

8. 전라북도 보행환경 베리어프리 100%계획 수립

1.	특별교통수단 1대당 일운행율 75%(하루 18시간) 운행 운전원 인건비 확보

❑ 현황 및 필요성

○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전체 34,730명 중 명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보유한 장애인콜택시는 209대임. 법정대수 100%를 충족하고 있지 못함. 232대로 90%를 충족하고 있지만 실제로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운전원을 확보해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도입대수가 정해져있으나 운영 방식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운행시간, 운행범위, 차량 1대의 일일 운행시간 등 차이 발생.

○ 장애계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감축 및 지역간 이용차별 철폐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요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노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운영비에 대한 국고 예산 편성.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노력 대응 필요.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각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이용방법, 이용시간, 운행범위 등 운행방식과 실제 대기시간에 영향을 주는 차량 1대당 운행률이 천차만별. 지역 간 편차 발생

○ 2023년 7월부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24시 운행, 예약 없이 이용(즉시콜·바로콜), 인근 지역까지의 광역 운행이 각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변경될 예정. 그러나 차량 운전원이 적게 고용 되어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이 낮은 상황에서 시간대별 차량 운행률 감소, 이용자의 대기시간 증가 우려.

○ 특히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실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대기시간은 27.7분, 최대 대기시간은 48분으로 비장애인의 콜택시 평균 대기시간 약 10분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상황임.

<표 1> 지역별 평균 대기시간

지역	신청-탑승 평균 대기시간	시간대별 평균 중 최대 대기시간	자료 미수집 지자체
평균	27.7	48.6	-
서울특별시	36	45	-
인천광역시	23.6	39	-
광주광역시	30	45	-
대구광역시	23	40	-
대전광역시	27	39	-
세종특별자치시			X
울산광역시	22.5	23	-
부산광역시			X
제주특별자치도	26	38	-
강원도	18	34	7/18
경기도	33	46	18/31
경상남도	39	62	12/18
경상북도	26	64	13/23

전라남도	32	67	5/22
전라북도	21	24	8/14
충청남도	27	45	8/15
충청북도	17	19	5/11

〈전북 특별교통수단 신청-탑승 평균대기시간〉

○ 전주시 14분/ 정읍시 30분/ 남원시 20분/ 진안군 30분/ 장수군 15분/ 임실군 20분으로 조사됨. 하지만 이 대기시간은 실제 이용자들이 말하는것과 차이가 있음.

○ 또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8개 시군)은 신청-탑승까지 평균대기시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음.

○ 차량운전원은 시간대별 운행차량 수 및 대기시간과 직접 연관. 즉시콜(예약없이 장애인콜택시 신청), 광역이동 운영에 영향. 전국 평균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는 1.16명 불과. 운전원을 증원하여 차량 1대당 일일 운행률을 75%까지 증가시켜야 이용자 욕구에 맞는 안정적 시행령 운영이 가능할 것.

<표 1> 지역별 차량 1대당 운전원 수 및 인건비 규모

지역	차량 1대당 운전원 수	1인당 운전원 인건비	전체 예산 중 운전원 인건비 비율
평균	1.16	3401만원	0.56
서울특별시	1.17	4103만원	0.46
인천광역시	1.14	4553만원	0.42
광주광역시	1.06	-	-
대구광역시	1.04	4956만원	0.35
대전광역시	1.21	4852만원	0.61
세종특별자치시	1.24	3302만원	0.31
울산광역시	1	5132만원	0.43
부산광역시	0.96	4213만원	0.41
제주특별자치도	1.26	5045만원	0.5
강원도	1.13	3628만원	0.6
경기도	1.11	3379만원	0.44
경상남도	1.15	3615만원	0.69
경상북도	0.98	3159만원	0.62
전라남도	1.16	2998만원	0.53

전라북도	1.03	3322만원	0.6
충청남도	1.01	3811만원	0.65
충청북도	1.05	3269만원	0.46

○ 장애계의 오랜 요구였던 시행령 개정이 대기시간의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원 증원을 통해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을 18시간 이상으로 조정해야 함.

○ 특히, 차량운전원은 시간대별 운행차량 수 및 대기시간과 직접 연관됨에 따라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차량 운전원 인건비 및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확대를 전제로 전라북도 예산 편성이 필요함.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국고 보조가 시작되므로 전라북도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건비 편성의 노력을 함께 해야 함.

○ 차량 1대의 일일 운행시간 제고 통해 이용수요가 많은 ▲07시-19시 전라북도 전체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100% 운행, ▲19시-23시 50% 운행, ▲23시-익일 07시 10%-20% 운행률 보장 필요.

❑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16조의 2

❑ 요구 사항

○ 특별교통수단 1대당 일 운행율 75%(하루 18시간)운행 운전원 인건비 확보

2.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확대 및 발달장애인 이용차별 철폐

❑ 현황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이용신청의 경우 장애등급 폐지 전 (2019년 7월 이전) 에는 발달장애(지적·자폐성) 1~2급 모두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이 가능하였고, 신청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하였다.

○ 그러나 현대 신규 이용 신청의 경우 장애등급 폐지 전 발달장애 등록자 중 2급은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조차 되지 않으며, 가입 및 신청되더라도 별도의 평가를 통해 이용 신청자를 선별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단순히 물리학적 이동만 가능하기에 이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부모인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 우선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된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현재 특별운송수단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지차체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 관련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복지서비스 신청)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16조의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요구 사항

○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확대 및 발달장애인 이용차별 철폐

3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을 위한 전북장애인버스 5대 확보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단체로 교육, 문화, 여행 등의 목적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버스가 없음.

○ 장애인버스는 장애인 단체이동의 유일한 수단임에도 전라북도는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 단체버스 타시도 운행사례

: 경기도에서는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단체로 교육, 문화, 여행 등의 목적을 해소하기 위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버스를 확보해 '누림버스'라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운행하고 있음.

❑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4조

❑ 요구사항

○ 전라북도 장애인버스 5대

4 2025년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 시행계획 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전국 17개 시도중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역은 10개임.

<특별교통수단 타 시·도 위탁기관 현황>

구분	위탁기관	구분	위탁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대구광역시	대구시설공단	강원도	㈜케이티아이에스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충청남도	㈜케이티아이에스
광주광역시	(사)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전라북도	㈜케이티아이에스
대전광역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울산광역시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경상북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남도	경상남도택시운송조합
그 외	충청북도- 2023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예정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주시, 창원시, 안동시, 청주시, 원주시, 경기도(가평군,연천군) *경기도 연천군은 경기도 31개시군중 최하위권에 있는 도시로 인구 4만여명.		

○ 전국 17개 시,도중 민간위탁 운영중인 곳은 5개지역(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뿐임. 하지만 전라북도는 제395회 임시회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16개 시도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표기된 자료를 제출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KTis)에 재위탁을 하게 됨.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시행될 시행령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 가능기관 규정에 1순위로 공공기관, 2순위가 지방 공기업으로 규정되어 지금부터 공공운영에 대한 준비를 해야함.

❑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2023년 7월 시행)

❑ 요구사항

○ 2024년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 시행계획 수립

5 특별교통수단 주말대여제 폐지

❑ 현황 및 필요성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 제 16조는 특별교통수단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운행 원칙 규정을 담고 있음. 하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지 않음.

○ 전북의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90% 달성을 했지만, 차량 1대당 운전원 수가 1명밖에 안돼 1일 24시간 운행을 할수 없는 구조임. 운전원이 부족하면 1일 24시간 운행을 할수 없고 장애인 이동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밖에 없음.

○ 상황이 이러할진데 전라북도는 특별교통수단을 주말에 대여(이용요금 3만원) 규정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음. 이는 운전자를 구할수 있는 장애인들만 이용할수 있어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을 훼손하는데도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

○ 이동의 공공성을 담보하려면 특별교통수단이 1일 24시간 운영될수 있게 일부 장애인들만 이용할수 있는 주말대여제를 폐지하고 운전원을 확보해야 함.

❑ 관련 근거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 제 16조

❑ 요구 사항

○ 특별교통수단 주말대여제 폐지

6 2024년까지 군단위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계획 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2022년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 현황[1)]

시·군	일반버스 현황 (시내 및 농어촌버스)			법정 대수 (32%)	'21년 저상버스 도입실적 (괄호안은 이월)				'22년 저상버스 도입계획					
	계	대형	중형		'20년 말	도입	폐차	'21년 말	도입(a)			폐차 (b)	순증 (a-b)	22년말
									계	당해	이월			
계	972	887	85	312	195	9	8	196	58	39	19	22	36	232
전주시	398	398	0	127	127	0	0	127	41	24	17	21	20	147
군산시	118	118	0	38	37	5	6	36	9	9		1	8	44
익산시	161	161	0	52	30	4	2	32	3	3			3	35
정읍시	53	49	4	17	1	0		1	2		2		2	3
남원시	44	10	34	14										
김제시	41	17	24	13					3	3			3	3
완주군 (전주 시민여객 소유)	10	5	5	3										
진안군	20	16	4	6										
무주군	11	8	3	4										
장수군	9	4	5	3										
임실군	23	21	2	7										
순창군	15	13	2	5										
고창군	33	31	2	11										
부안군	36	36	0	12										

○ 저상버스가 전무한 시,군: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관련 근거

○ 전라북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1) 출처: 전라북도

❑ 요구 사항

○ 2024년까지 군단위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계획 수립

7 202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개선 계획 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이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도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의무도입을 예외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음.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도로 등의 사정을 심의할 때) 교통약자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도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국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거나 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은 공무원들이 그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가지게 될 우려가 있음.

○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심사 과정에 실제 저상버스 이용자들의 현장 심사가 부재할 경우,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과 될 수 있음. 이에 **교통약자를 포함한 구성원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외 노선에 대한 현장 심사 및 개선안 검토, 이행 여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심사할 필요 있음. 이에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심의 기구 설치하여 저상버스 도입불가 노선에 대한 개선계획이 수립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

❑ 요구사항

○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개선 계획 수립

○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심의 기구 설치

8 전라북도 보행환경 베리어프리 100% 계획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모든 시민들이 보행권을 침해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보행환경 베리어프리 100% 실현을 위한 더욱 촘촘한 과제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함.

○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완주군에 1개소만 지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요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 114p.)

❑ 관련 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 요구사항

○ 제4차 이동편의증진계획(or 보행환경계획)에 전라북도 보행환경 베리어프리 100% 계획 수립

2. 최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

세부 요구안

9.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200명 확대
10.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전담인력 40명 확대
11.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9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200명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63%인데 반해, 만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며 뇌병변, 발달 장애 유형의 노동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임.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실천영역을 보여주고 있음. 이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노동에 참여함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하여 비장애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자리임.

○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함. 특히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음.

○ 3대 직무 수행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대중을 상대로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공론화하여,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를 생산하고 실현하는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

○ 전라북도는 2022년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복지형) 사

업을 통해 1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추진하고, 2023년엔 71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이 없고 월 56시간 일자리(복지형)으로 4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근로지원인도 사용할수 없어 나쁜 일자리 모델임.

○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인 자립생활센터에서 4시간을 자부담해야 하는 현실. 계속 복지형을 유지한다면 위탁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향후 권리중심일자리의 질은 하락할 것임.

❑ 관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53조

❑ 요구사항

○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간제' 유형 200명 확대

10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전담 인력 20명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전라북도는 2023년 총 71명의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으로 전담이력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서울시에서 「서울시복지재단에 위탁한 권리중심일자리사업 평가체계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전담인력 외에 내부 지원인력을 평균 4명(4.3명)이상 두고 있음

○ 동일 사업을 진행하는 전라남도의 경우 채용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의 비율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비해 전북도의 지원 수준은 너무나 열악함.

○ 전북도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3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 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이에 대해 지원체계가 담보되어야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 이에,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의2(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10조(고용지원)에 따른 공공부문일자리의 지원체계 강화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의 확충을 요구함.

❑ 관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4조

○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8조의2, 제10조

❑ 요구사항

○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전담인력 20명 지원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명당 전담인력 1명의 비율)

11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음(국가통계포털, 2021)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비율
중증장애인	24.1%	7.1%	76.2%
경증장애인	40.35	6.8%	56.7%
전체 국민	60.4%	3.5%	37.4%

○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구직 의사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국가통계포털, 2013-2021), 이는 중증장애인의 향후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율	78.5%	75.2%	79.2%	78.3%	78.8%	77.9%	77.4%	78.7%	76.2%

※ 연도별 중중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구직을 단념했거나, 심신장애, 휴식 등의 이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감소되어야만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음.

○ 전라북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같은 정책은 당장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지난 30여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 긍정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간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고용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촉진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체가 아닌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것을 요구함.

❑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요구 사항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3.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세부 요구안

12. 전라북도 탈시설지원조례 제정(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
13. 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장애인 거주시설폐쇄와 탈시설 이행 계획수립
14.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지원
15. 탈시설 장애인 및 65세이상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16. 탈시설정착금 인상 및 확대(1000만원→1500만원)

12 전라북도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로서 대한민국은 2008년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설

화를 방지하고, 소규모주거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017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대한 해석 지침을 일반논평 제 5호로 발표하고 '자립적생활','자립적 주거형태'등에 대해 정의함

- '자립적 생활'이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하여 선택과 통제를 수행하고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 받음을 의미한다'고 규정함

- '자립적 주거형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생활 형태와 주거 형태로 인하여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백 명 이상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도, 5~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는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의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수 없다'고 명시함.

>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 5호
>
> **Ⅲ. 당사자국의 의무**
> C. 실현의 의무
> 58. 탈시설화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변혁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복합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시설의 폐쇄와 시설수용 제도의 철폐가 포함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일정이 정해진 개인별 전환 계획 및 포옹적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광범위한 개인별 지원서비스의 수립이 포함된다. 따라서 탈시설화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조율된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접근은 정부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태도와 적절한 변화, 예산 배정, 구조 개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래 장애인 복지의 근간이 되었던 **시설화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인권 정책으로 전환**되었음. 장애인을 보호·격리·수용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고 변화임.

○ 시설 퇴소를 촉진하고 기존의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또는 희망자가 시설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환경이 구축 되어야 함.

○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변화에 대한 종단연구를 앞서 진행한 미국의 콘로이박사(미국 성과분석센터장)는 미국 발달장애인 탈시설화 과정과 펜허스트(Pennhurst, 발달장애인 시설)탈시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내용을 이야기 함.

Pennhurst 거주인 특성 – 중증장애

이 PC에 저장됨

- 1978년 기준 평균 나이 40세
- 시설에서 평균 약 24년간 거주
- 50% 의사소통 어려움.
- 50% 완전한 대소변 처리 어려움.
- 40% 폭행당한 경험 있음.
- 86% "중도 또는 최중도" 장애
- 약 15년간 약 1,156명 대상으로 연구

지역사회의 탈시설화 노력의 결과

- 1.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 매우 개선됨
- 2. 평균 수명의 증가
- 3. 소규모의 가정이 더 나은 결과 제공
- 4. 비용은 양쪽 큰 차이 없음.
- 5. 중증장애인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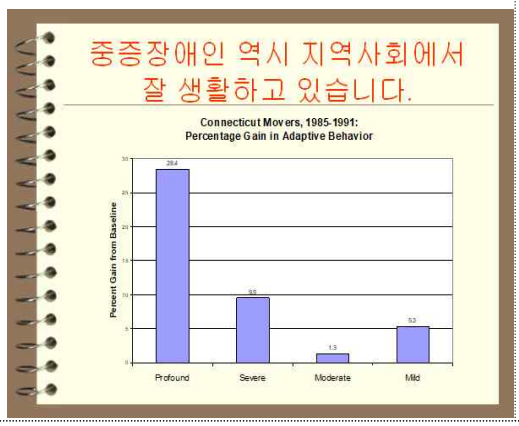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 (Pennhurst 연구 1978-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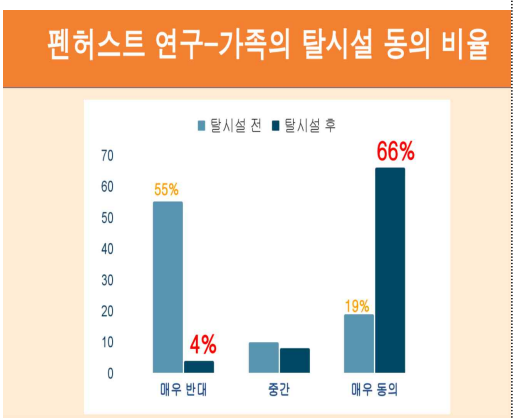
- 행복을 포함한 삶의 질 하위 요인 14가지에서 모두 상승
- 독립생활 기능 향상
- 적응행동 및 문제행동 개선
- 회피하던 가족들이 지원하는 태도로 전환
- 시설 거주자들은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보고함.

비용은 양쪽이 큰 차이 없음

-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단지 지역사회 근무자가 돈을 덜 받기 때문만은 아님.
- 실제 드는 비용은 거의 동일함.
- 현재 펜실베니아 주 $100,000 vs. $420,000
- 시설거주와 지역사회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한 최신 연구 논문

Felce, David (2016). Community Living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nravelling the Cost Effectiveness Discourse.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ume 14, Issue 3, September 2017,* Pages 187–197. 10.1111/jppi.12180.





○ 위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 미국 펜허스트 종단연구(2019년, 대구지역 초청 간담회 발표자료)는 1979~1991년 20년간 1,154명을 추척연구 결과 86%가 중증~최중증 장애인이였으며, 조사결과 당사자의 삶의 질이 '매우' 개선되었으며,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고 가족관계 개선 등의 결과로 나타나 이후에는 가족이 탈시설 후 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장애인인권단체유럽자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 ENIL, 국회도서관 장애인탈시설화 한눈에 보기 자료출처)에 따르면 장

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옴. 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 비율이 낮아졌으며, 지원인력의 수도 감소함. 서비스 사용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지원인력의 업무가 보다 예측 가능한 근로형태로 자리잡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가족구성원과 친밀하게 지내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대 예방을 위한 통제와 조사가 가능해지고, 지원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였음.

※ 참고 - 기사및 자료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376 **(제임스콘로이 박사 "장애인 탈시설 이후 삶의 질 높아져"-경북일봄)**

https://www.newsmin.co.kr/news/41793/ **(제임스콘로이 박사 대구 강연…"중증장애인 탈시설 중요" -뉴스민)**

https://is.gd/K94lqS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 2021년 국회에서는 탈시설 지원을 보장하는 법률이 발의되었고, 2022년 서울시에서는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 지자체 차원의 탈시설 권리보장을 제도화 하였음. 반면 전라북도는 2021년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도 연내 제정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지만 3년째 답보상태임. 이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탈시설지원을 위한 전북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함.

❑ 관련 근거

○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 5호

○ 2021년 전라북도 탈시설 5개년 계획

❑ 요구 사항

○ 전라북도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13 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이행 계획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장애인 학대 발생시설 조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현황(2016년~2021.8월, 연도별, 시도별)을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 학대로 판명된 시설만 181곳에 달함. 한 달에 3건의 인권침해 사건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거주시설 181곳 중 95곳은 어떠한 행정처분조차 받지 않았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도 개선명령이 대부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는 2014년 전주자림원, 2017년 남원평화의집, 2019년 장수벧엘장애인의집, 2020년 무주하은의집, 2022년 전북보성원(익산) 등에서 장애인학대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시설폐쇄및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자립생활 지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전라북도는 2021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에서 '거주시설 단계적 폐지 추진'도 명시한 바 있다.

❑ 관련 근거

○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 5호

○ 2021년 전라북도 탈시설 5개년 계획

❑ 요구사항

○ 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이행 계획수립

14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탈시설 장애인에게 있어 주거 지원은 활동지원 및 소득지원과 함께 가장 필요한 기본 정책임. 시설을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며 머무는 체험홈은 물론 체험홈 이후 자신 명의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자립주택은 탈시설을 촉진해 왔음. 이에 더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타 지역은 주거 공간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까지 도입하여 중증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정책을 확대해가는 추세임.

○ 전라북도 역시 시설 거주 장애인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편의성이 보장된 주거와 독립적 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거유지서비스 도입을 통해 재가장애인을 지원하는 설계로 시설화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

❑ 관련 근거

○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및 지원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원주택 조례

❑ 요구사항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대

○ 장애인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결합된 주택제도 도입.

15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에서는 24시간 생활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탈시설을 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는 월 50시간 임.

지역	대상기준(세부)	추가지원시간
서울시 성북구	시비지원대상자 중 최중증 1인 및 와상사지마비	150
서울시 중랑구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시비추가)이용자 중 최중증장애인	150
인천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1-12구간)	80

○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것은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 자리잡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라고 할수 있고,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지원이다. 이는 탈시설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 장애정도와 필요여부와는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50시간씩 지원하고 있다.

○ 복지부 지원시간을 고려하더라도 24시간 거주시설 직원에 지원을 받아오던 탈시설 장애인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부족한 지원이다. 따라서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실현될 수 있을만큼 적극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부 활동지원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활동지원시간을 채울수 있는 것은 전라북도 활동지원 추가를 통해서이다. 장애정도와 필요도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요구사항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확대 (장애정도 및 필요도에 따라 120시간까지 확대)

○ 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200시간으로 확대

16 탈시설 정착금 인상 및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20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 지자별로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전세금을 납입하면 다른 생활가재 도구들을 구입 할수 없음.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등)
○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6조(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 요구사항

○ 자립정착금 1,500만원으로 증액

5.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세부 요구안

17. 전북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명시)
1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확대

19. 전라북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전남수준)
20. 탈시설 장애인 긴급주거지원 대상선정 및 주거지원
21.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17 전북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명시)

❑ 현황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에는 '탈시설'을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 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법 제6조(탈시설 자립생활지원)에는 3.일정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주거(체험홈)의 지원 외에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 및 주거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전라북도에서 탈시설 하려는 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음. 해당 조례에 주거 및 주거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전라북도 탈시설 정책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음.

○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거와 주거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므로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함.

❑ 관련 근거

○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6조(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주거의지원

❑ 요구사항

○ 전북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명시)

: 제6조 4. 영주할수 있는 주거 및 주거서비스 조항 추가

18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1) 24시간 추가지원 대상자 확대 추가지원 기준 개편

2) 발달장애인 추가지원의 필요성

3) 탈시설 장애인 추가지원 필요성

3-2) 65세 고령 시설 퇴소자에 대한 시비 자체 지원

❑ 요구사항

1) 전라북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 '23년 31명 → '24년 100명

- 연차별 인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계획 수립

2) 지자체 추가지원 확대 및 개편

- 발달장애인 120시간 추가지원

현 행	개 편
① 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인정점수 400점↑, 성인X1 360점 이상) : 388시간 이내 ② 중증 장애인 1인 가구(인정점수 440점↑, 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6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 120시간 이내	① 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인정점수 400점↑, 성인X1 360점 이상) : **상한 폐지** ② 중증 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60점, 아동 X1 280점이상,** 6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 **250시간** ③ 중증 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00점,**

③ 중증 장애인 1인 가구(인정점수 400~439점, 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6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 70시간 이내 ④ 중증 장애인 1인 가구(인정점수 380~399점, 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6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 20시간 이내 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⑥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⑦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⑧ 만 13세미만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 ⑨ 만 13세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 ⑩ 만 13세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 ⑪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5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 ⑫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	아동 X1 260점이상, 6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 150시간 ④ 중증 장애인 1인 가구(인정점수 380~399점, 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6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포함) : 20시간 이내 (삭제) ④ 발달장애인 : 120시간 추가지원 (신설) 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⑥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⑦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⑧ 만 13세미만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 ⑨ 만 13세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 ⑩ 만 13세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 ⑪ 탈시설 장애인 등 : 200시간 (만 65세 이상으로 국비 신청이 불가능한 시설 퇴소 장애인을 포함) ⑫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100시간 이내

19 전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자립생활,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아래 2023년 시도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금 현황을 보면 전북은 전국 평균 198백만원을 훨씬 밑돌고 있음.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지원 현황 (국비/광역시도비/시군구비)>

(단위:개소/백만원, 기준일:'22.12.31.)

시도명	개소수					개소당 예산(평균)			
	계	국비	시도비(자체)	시도비(매칭)	시군구비(자체)	국비지원센터	(순수)광역시도비 지원센터	(기초매칭)광역시도 지원센터	시군구비 지원센터
서울	72	8	2	46	16	**336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 지원 178백만원	**257백만원**	**302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250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52백만원	**125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125백만원
부산	18	8	10	-	-	**15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118백만원**	-	-
대구	7	6	-	1	-	**199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 지원 41백만원	-	**217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177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40백만원	-
인천	11	5	-	6	-	**196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38백만원	-	**196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100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96백만원	-
광주	9	4	5	-	-	**16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2백만원	**103백만원**	-	-
대전	7	3	4	-	-	**159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1백만원	**100백만원**	-	-
울산	6	2	-	4	-	**19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32백만원	-	**96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48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48백만원	-
세종	**1**	**1**	**-**	**-**	**-**	**28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122백만원	-	-	-
경기	59	6	-	52	1	**20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42백만원	-	**200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54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146백만원	**123백만원**
강원	**6**	**4**	**-**	**2**	**-**	**16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2백만원	-	**200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4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16백만원	-
충북	9	5	-	4	-	**17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20백만원	-	**130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52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78백만원	
충남	8	5	2	-	1	**160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2백만원	**206백만원**	-	**192백만원**
전북	6	4	-	2	-	**16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10백만원	-	**168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67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101백만원	-
전남	11	5	-	6	-	**216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58백만원	-	**212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210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42백만원	-

경북	4	2	-	2	-	15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116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23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93백만원	-
경남	19	5	-	10	4	20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50백만원	-	191백만원 - 광역시도 지원 57백만원 - 기초시군구 지원 134백만원	150백만원
제주	2	2	-	-	-	242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84백만원	-	-	-
계 및 평균	255	75	23	135	22	198백만원 - 국비센터 지원금 158백만원 - 지방비 추가지원 40백만원	157백만원	167백만원	125백만원

❑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 8조(위탁 및 지원)

❑ 요구사항

○ 전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전남 수준으로 상향)

20 탈시설 장애인 긴급주거지원 대상 선정 및 주거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전라북도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기준 및 지침이 없어 탈시설 할수 있는 주거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음.

❑ 관련 근거

○ 장애인, 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요구사항

○ 탈시설 장애인 긴급주거지원 대상 선정 및 주거지원

21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우리나라 등록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25.5만명(2021년 기준)으로 2018년에 비해 약 1.8만명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돌봄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78% 가족(대개 부모)임을 알수 있음.

○ 요근래 돌봄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에 의한 발달장애인 학대등이 계속되고 있어 주간보호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발달장애인의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지원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는 우선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최대 하루 8시간(확장형 기준)까지 낮 시간을 지원한다.(* 기본형 월 125시간 →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 → 월 176시간)

○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원활한 주간활동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 뿐만 아니라 낮시간을 포함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또한 전라북도가 구축해야 할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임을 분명히 하고, 조속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라북도 발달장애이 권리보장및 지원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요구사항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신청자 예산 확보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5. 장애인 건강권 보장

세부 요구안

22.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22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KOSIS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2022.9.7.) 전라북도 등록 장애인 중 지체장애(63,940명), 뇌병변장애(11,814명)으로 위와 같은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 인원이라고 볼 수 있음.

○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기며, 비대칭적인 신체의 움직임으로 신체 기능의 결함이 발생하게 됨.

○ 또한 고령화 진행 됨에 따라 만성질환 발생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 비장애인과 다르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2차 장애가 발생 될 위험성이 높고, 병을 발생 되었을 때 신체적 회복 속도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금전, 인적 서비스, 돌봄 등)의 문제가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2조(기본 이념)에 따르면 ①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2차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

❑ 관련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요구사항

○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장애인 의료지원체계 수립

○ 전라북도 전 의료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진행

○ 전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 추가 설치